



인도네시아 세무 안내

정보 교환 대상국가 추가

A. 조세 관련 정보의 교환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협정의 효력에 대한 공지

국세청장은 2018년 5월 11일 인도네시아와 버뮤다 간의 조세 / TIEA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 교환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세청장 회람 No. 08/PJ/2018(SE-08)을 발행되었다.

SE-08는 2011년 6월 22일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에 체결되고 2014년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령 제 95호를 통해 비준된 내용에 대한 실행안으로 2017년 11월 23일부터 발효되었다.

SE-08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버뮤다 정부와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2. 버뮤다 정부와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SE-08은 다음과 같이 인도네시아-버뮤다 TIEA에서 규제되는 조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인도네시아 조세:
 - a. 소득세;
 - b. 부가가치세.
2. 버뮤다 조세:
 - a. 모든 종류의 직접세.

1. 이번 호:

- A. 정보 교환 대상국가 추가
 - B. 인도네시아 정부 및 버뮤다 정부 국제 협정
2. 환급 가산금의 계산 및 지급 절차에 대한 개정
 3. 특정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특례

b. 인도네시아 - 버뮤다 TIEA에 명시된 유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조세

B. 국제협정의 이행 상황에서 요청에 근거한 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 지침

국가간의 요청에 근거한 정보 교환을 위한 요청 절차에 대한 재경부 장관령 No 19/PMK.03/2018 및 국세청령 No. PER-28/PJ/2017의 시행에 따라 2018년 6월 6일에 국세청은 국세청장 회람 No. 09/PJ/2018 ("SE-09")을 발행하였다.

SE-09는 절차, 흐름, 기한, 서신 및 문서 형식 과 사례들을 설명하는 국세청의 실무 지침 가이드라인이다.

환급 가산금의 계산 및 지급 절차에 대한 개정

2018년 6월 28일 재경부장관은 환급 가산금의 계산 및 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 No. 226/PMK.03/2013의 두 번째 개정안으로 규정 No. 65/PMK.03/2018 ("PMK-65")을 발행하였다. 본 규정은 2018년 6월 29일에 발효되었다.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2008년 이전과 이후의 토지 및 건물 재산세(PBB)의 가산금에서 농장 부문, 산림 부문, 광업 부문 및 기타 부문을 대상에 추가하였다.
2.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환급 가산금은 우선적으로 납부할 세액과 상계된다. 환급 가산금과 상계해야 할 납부할 세액은 SKPPIB (가산금 승인 결정서) 발행 시점에 확정된 세액에 한한다.
3. 미국 달러화 장부기장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환율에 의한 루피아화로 다음의 시점에 지급된다:
 - a. 국세기본법 ("KUP Law") 제 17B조에 의한 환급세액 통지서 발행시점
 - b. 이의 신청이나 조세재판의 경우 그 판결일
 - c. 수정요청 결정 통지서 발급일
 - d. 고지에 포함된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결정서 또는 STP에 의한 가산세 감면 결정서 발급 시점
 - e. 세무확정 통지서의 결정내용 감면 또는 취소에 관한 결정통지서 발급시점
 - f. 체납처분 취소에 관한 통지서 발행시점

특정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

2018년 6월 8일에 2018년의 정부 시행령 No. 23 ("PP-23")의 발효로 납세자가 일정 매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되던 소득세에 대한 2013년 정부 시행령 No. 46 ("PP-46")가 개정되었다. 본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규정은 중산층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목적하에 동일 과세 연도에 총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편의와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PP-46과 비교한 PP-21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최종 분리과세 세율을 1%에서 0.5%로 경감하였다.
2. 최종 분리과세 세율의 적용 기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였다. 즉 개인 납세자는 최장 7개 과세 연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납세자는 최장 3개 과세 연도, 합명, 합자회사 등 기타 법인 납세자는 최장 4개 과세 연도 이다.
3. 납세의무자가 정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통하여 정상세율을 적용할수도 있다.
4. 최종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유형의 납세의무자도 있다.
5.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에도 동일 과세 연도에 48억 루피아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6. 해당 분리과세 소득세는 납세자가 월별로 납부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원천징수나 가대징수를 통하여 납부될수도 있다.

PP-23과 이전 규정으로 인한 차액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경과 규정

2018년 PP-23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PP-46을 적용하여 납부한 사업자는 동 PP-23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연도 초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은 매월 총 매출액의 1% 를 적용한다.
2.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는 총 매출액의 0.5%를 적용한다.
3. 2019년 귀속분은 동 규정에 의한 정상세율을 적용한다.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artners:

Melisa Himawan Tax Managing Partner	Business Tax and Corporate License	mehimawan@deloitte.com
Balim	Transfer Pricing	bbalim@deloitte.com
Cindy Sukiman	Business Tax	csukiman@deloitte.com
Dionisius Damijanto	Business Tax	ddamijanto@deloitte.com
Heru Supriyanto	Business Tax	hsupriyanto@deloitte.com
Irene Atmawijaya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atmawijaya@deloitte.com
John Lauwrenz	Business Tax	jlauwrenz@deloitte.com
Roy David Kiantiong	Transfer Pricing	rkiantiong@deloitte.com
Roy Sidharta Tedja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oytedja@deloitte.com
Turmanto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Custom & Global Trade	tturmanto@deloitte.com
Yan Hardyana	Business Tax	yhardyana@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omprising approximately 340 partners and 8,8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the affiliates of Deloitte Southeast Asia Ltd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All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individual country practices and their affiliates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